

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 포상규정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(이하 재단)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인 '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'의 포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수상자격)

본 상은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중 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의 책임저자(교수)에게 수여한다.

제 3조 (후보자 추천)

1. 포상후보자는 논문분야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.
2. 논문분야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서 1편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
제 4조 (심사위원회 구성)

1.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지 담당 부회장이 되며, 위원은 논문지편집위원장, 재단의 해당 부서 단장이 된다.
2. 필요할 경우, 회장이 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 5조 (수상자 선정)

1.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논문을 대상으로 수상후보자 2명을 선정하여 추천서와 함께 법제포상위원회에 추천한다.
2. 법제포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수상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.

제 6조 (시상)

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재단에서 시행하며 상패(상장)는 재단의 명의로 수여한다.

제 7조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포상운영규정에 준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이사회에 의결된 날 (2012년 6월 12일)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이사회에 의결된 날 (2014년 6월 19일)부터 시행한다.